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1선거구 고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옥 양식의 공공건축물 신축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반 건축물 대비 고가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한옥의 신축이 자치구 등의 예산 사정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공한옥 신축, 한옥자재창고 등 한옥건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가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한옥의 범위를 자치구 또는 시 투자·출연기관 소유 한옥 까지 확대함으로써,

관내 공공건축물의 한옥화를 활성화하고자 이렇게 본 조례개정 안을 발의하는 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